

의안번호	2202955
의 퇴 인	김한규의원
회 답 일	2024. 9. 4.
추계번호	24C3081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아이돌보미의 자격)	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·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하고,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20조(비용의 지원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26조(비용의 보조)	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28조의2(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)	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(아이돌보미의 자격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0조(비용의 지원 등)	
3	안 제26조(비용의 보조)	
4	안 제28조의2(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)	

2. 상세 사유

□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도입(안 제7조)

- 2023년 기준 아이돌보미 수는 28,071명이고,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운영 및 아이돌보미 적성·인성 검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[표 1] 아이돌보미 수 현황

연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아이돌보미 수	24,677명	24,469명	25,917명	26,675명	28,071명

자료: 여성가족부

[표 2]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등 운영사업 현황

구분	실적(2023년)	예산액(백만원)
아이돌보미 교육과정 운영	교육인원 3,946명	3,995
아이돌보미 적성·인성 검사	적성·인성 검사 인원 9,855명	88

자료: 여성가족부

-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·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현재 아이돌보미 자격·교육 및 노무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(정원 13명)에서 담당하고 있는데, 국가자격 도입에 따라 담당인력 및 관련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별도의 자격시험 등이 실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재정소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향후 아이돌보미 자격 담당인력 및 관련 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현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비용의 지원 및 보조 등(안 제20조, 제26조)

- 개정안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으로 2024년에 아이돌봄수당 약 3,842억원, 아이돌보미 양성 사업 약 573억원,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사업 203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,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

[표 3]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(2024년)

구분		예산액(백만원)
아이돌봄수당	영아종일제 돌봄(0~2세)	28,033
	시간제 돌봄(0~12세)	352,138
	취약가정 추가지원	3,293
	위기임산부 추가지원	758
아이돌보미 관련	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	57,299
서비스제공기관 등 지원	서비스제공기관 운영	20,300
	광역지원센터 운영	4,697
	중앙지원센터 운영	1,249

자료: 여성가족부

[표 4]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

유형	소득기준 (중위소득)	정부지원비율		
		1자녀		2자녀 이상
		0~5세	6~12세	
㉠형	75% 이하	85%	75%	본인부담금의 10% 추가지원
㉡형	120% 이하	60%	30%	
㉢형	150% 이하	20%	15%	

자료: 여성가족부

-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에 대한 비용 지원 관련 조항이 임의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되고, 정부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운영 비용 보조의 기준·범위 등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현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(안 제28조의2)

-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하여 조사를 하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-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고 있고, 여성가족부는 2022년 4억 5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
 - － 2022년 실시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조사, 아이돌보미 특성·활동실태 및 민간 육아도우미업체 실태 조사, 시·도 광역지원센터 및 시·군·구 서비스기관 실태조사, 일반 국민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정도 및 잠재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였음
-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,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내용 및 범위 등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사업의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현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